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기영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,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종류(안 제38조의2 제1항)

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조사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자료 확보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

나.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대상(안 제38조의2 제2항)

기초조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등록한 부가통신사업자 및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심층조사는 특정한 사업분야 또는 사업내용의 현황 파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함

다.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내용(안 제38조의2 제3항)

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기업 일반·재무현황, 기술·인력현황, 거래관

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

라.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절차(안 제38조의2 제4항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·종류·대상·대상 선정 기준·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, 그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함

마.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방법(안 제38조의2 제5항)

실태조사는 현장조사, 서면조사,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

바.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의견수렴(안 제38조의2 제6항)

실태조사 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, 조사 내용 등) 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는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. 기초조사 :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
2. 심층조사 : 부가통신사업 중 특정한 사업분야 또는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

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.

1. 기초조사 : 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등록한 부가통신사업자 및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가통신사업자
2. 심층조사 : 부가통신사업 중 특정한 사업분야 또는 사업내용의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

③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초조사

가. 일반현황, 재무현황

나. 기술 및 연구개발, 인력현황 및 수요

다. 부가통신서비스 제공, 거래,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, 데이터 보호
및 이용 현황

라.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2. 심층조사 : 주요 경쟁상황, 신기술 활용, 서비스·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내용의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·종류·대상·대상 선정 기준·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, 그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.

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, 서면조사,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8조의2(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, 조사 내용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는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</u> <u>1. 기초조사 :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</u> <u>2. 심층조사 : 부가통신사업 중 특정한 사업분야 또는 사업내용의 구체적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</u> <u>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.</u> <u>1. 기초조사 : 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등록한 부가통신사업자 및 신고한 것으로 간</u>

주하는 부가통신사업자

2. 심층조사 : 부가통신사업 중
특정한 사업분야 또는 사업내
용의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
수립 및 의사결정의 필요성을
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
장관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
자

③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
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초조사

가. 일반현황, 재무현황

나. 기술 및 연구개발, 인력현
황 및 수요

다. 부가통신서비스 제공, 거
래, 정보 교환 등 상호작
용, 데이터 보호 및 이용
현황

라.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
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
한 사항

2. 심층조사 : 주요 경쟁상황, 신
기술 활용, 서비스·거래 현황
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
통신부장관이 사업내용의 현
황 파악을 통한 정책 수립 및

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·종류·대상·대상 선정 기준·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, 그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.

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, 서면조사,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241